

# WTO 加入이 中國經濟의 國際化에 미치는 영향

1. 序
2. 中國의 WTO 가입추진 경위와 전망
3. WTO 가입이 中國經濟의 國際化에 미치는 영향
4. 結論



金 益 洙  
高麗大 經營大 教授

## 1. 序

1986년 7월 GATT에 재가입 의사를 공식표명한 이후, 중국은 20여차례에 걸친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미, EU 등과 WTO 가입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3차례에 걸친 지재권 분쟁, 李登輝 총통의 訪美(95년 7월), 對美 무역흑자, 인권문제, 무기수출 등으로 인해 악화됨에 따라, 아직까지도 WTO 가입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이후에는 미·중 관계가 경제실리 위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의회의 對中 견제분위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중국의 WTO 가입 목표가 금명간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제4위의 무역대국(홍콩 인수 이후)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세계통상환경에 주는 여파가 적지 않음은 물론 그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확대·심화와 중국경제의 국제화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본고는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전망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경제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 2. 中國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전망

### 가. 국제경제기구 가입: 國際化 추진의 外生的 계기

중국의 WTO 가입이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이 多者間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와 금융, 무역, 투자, 기술 교류면에서 얼마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국제화 추진계기는 80년대초 IMF, 세계은행(World Bank)에의 순차적 가입에 의해 마련되었는바, 前者는 주로 중국의 단기자금의 차입과 국제수지 내지는 유동성의 조정에, 그리고 後者는 주로 장기개발차관자금의 이용가능성 증대 및 중국의 현대화 자금 조달에 각기 기여하였다. 중국은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조건(conditionality)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경제관련 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끔 재조정·정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인 WIPO에 가입해 있으며 지적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의 협약국이다.

지역경제협력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1986년 중국은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전신인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1980년 설립)에 가입한 데 이어, 1991년에는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무역·투자의 확대, 인적 자원의 개발, 역내국가간 과학·기술의 교류 증진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1997년 8월말 현재까지도 아직 ‘국제경제의 UN’이라 할 수 있는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바, WTO는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다자간의 국제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 나. 中國의 GATT·WTO 가입 추진경위

따라서 WTO 가입은 중국정부로서는 21세기를 향한 중국경제의 국제화 추진에 있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중국이 GATT/WTO에의 復歸(resumption)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돌이켜 보건대, 중국(당시 중화민국)은 원래 1949년 GATT가 설립될 당시 23개 원체약국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장개석 정권이 대만으로 패퇴한 1년뒤인 1950년 일방적으로 GATT를 자진 탈퇴함으로써, 원체약국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외부세계에 이해되었다.

실제로 1984년 1월 MFA 가입, 동년 12월 GATT 평의회 옵저버 지위 획득시까지만 해도, 중국정부는 원체약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이 공상업부문에 확대되고 현대화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1986년 7월 GATT 가입

을 공식 추진하게 되었고, 당지도부내의 검토를 거쳐 신규가입(accession)이 아닌 원체약국 지위의 回復(resumption)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3월에는 중국의 GATT 가입에 관한 실무작업반이 조직되어 20여차례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1995년 1월 이후에는 중국의 GATT 가입협상이 자연스럽게 WTO 가입협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중국 WTO 가입협상 타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들은 중요한 가입협상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악화라 할 수 있다. 미국은 ①중국의 미흡한 시장개방조치, ②對美 무역흑자 폭 축소노력의 부족, ③인권문제, ④지재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침해사례 등을 이유로 WTO 가입의 제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중국의 가입을 반대해 왔다. 특히 美 의회는 세계정치·무역에서 높아져가는 중국의 위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권문제 등을 내세워 중국의 WTO 가입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原체약국 지위의 회복이 아닌 신규가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U, 캐나다, 일본 역시 융통성에 있어 미국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중국경제의 거대화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 시장개방, 지재권 보호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실제로 1995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4대 교역국 무역회담」(Quad Trade Meeting)에서 4개국 대표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市場接近 등 WTO 가입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중국의 WTO가입을 정치외교적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sup>1)</sup>

이는 곧 미국과 EU측이 중·미관계의 악화라는 중단기적인 費用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이란 對中협상 카드를 당분간 유지·사용할 것이며, 오직 중국이 自由競爭·公正貿易을 신봉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될 때에만 허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과 EU측은 중국의 WTO가입을 중국경제를 개방경제체제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인 ‘統制지렛대’(leverage)로 삼으면서, ①중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양허, ②국가독점의 억제, ③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④무역권의 개방 등 중장기적인 혜택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 다. 중국의 WTO 가입 전망

이같은 이해상충의 상황하에서 중국이 언제 어떠한 지위로 WTO에 가입할 수 있을지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가입시기에 관해서는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있으므로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협상추이로 보아, 빠르면 97년말, 아무리 늦어도 98년말까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중간 지재권분쟁 등 돌출사태가 재발할 경우 중국의 WTO 가입이 장기화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

1)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WTO Requests, Quad Meeting, Prospects," *KEI Report*, Oct. 23 1995, pp. 2-3.

다.

중국의 가입조건에 관해서도 내용이 정치적 타협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市場接近 수준, 追加讓許의 내용 등은 그동안의 미·중 양국간 가입조건 및 양허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길들이기 전략」을 쓰는 데 맞서, 1986년 7월이후 일관되게 GATT 원체약국 지위 회복과 WTO내 각 개별협정에서 개도국 지위의 향유를 고집해 옴으로써 상당한 對美 협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貿易障壁 완화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중국측은 끊임없이 추가되는 미국측의 ‘讓許요구의 범위’(the extent of the concessions)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sup>2)</sup>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상 모든 경제제도의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장접근도 향상과 법·경제제도의 투명화 조치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국내사정을 감안, 자신의 페이스 아래 段階的으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시장접근, 보조금 축소 등에 관한한 중앙내의 다른 파벌간,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조정 과정이 필요하므로 단시간내에 미, EU측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sup>3)</sup>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段階的 접근방식(phasing approach)은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 전략, 早期 市場接近 戰略, 短期的 實利追求 戰略 등과 이해상충을 빚어 왔으며 중국의 WTO 가입전망의 최대 방법론적 장애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中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실리가 맞아 떨어질 경우, 중국의 WTO 가입은 이루어질 것인바, ①중국이 1995년 7월 WTO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점, ②총교역액 5,500억달러(홍콩인수이후), 세계 제4위의 교역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WTO는 유명무실하다는 점, ③미국과 중국의 정치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에 변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중국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입조건 역시 중국이 WTO에 가입할 정도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중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끔 모종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일관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 통상외교의 특성상, 중국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95년 7월이후에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체약국단의 특별한 결정’이 없이는 WTO 原체약국 지위의 향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국은 가입조건에 관해 회원국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미국이 극력 반대하지 않으면 커다란 절차상의 걸림돌은 아니다.

### 3. WTO 가입이 中國經濟의 國際化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추진경위와 가입전망을 살펴보았으나, 그러면 과연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중국의 법·체제, 경제정책, 시장경쟁구조, 기업체질 등이 어떻

2) “China Voices WTO Doubts,” *Financial Times*, July 5 1995.

3) 필자와 비슷한 의견은 “WTO for China?”, *Asia Wall Street Journal*, Oct. 3 1995, p. 6에서도 드러났다.

게 변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①경제관련 법규·관행의 명료화와 국제규범 준수 의무 증대, ②무역장벽의 철폐·완화, ③정책적 시장진입장벽의 완화, ④국제경쟁에의 노출과 기업간 경쟁의 심화 등 네가지 요인에 중점을 두어 그 영향을 파악하기로 한다.

#### 가. 경제관련 법규·관행의 명료화와 國際規範 준수 의무의 증대

우선 1979년 이후 지금까지 약 17여년동안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관련 法規·政策·慣行은 아직도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법규와 제도가 WTO 협정상의 국제규범에 맞게끔 선진화되어야 하는바, 이는 중국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무역, 통관·검사, 외환 등 무역 및 투자관련 법규·정책·제도의 개혁과 가격·조세·금융·회계제도의 선진화는 중국경제 체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開放競爭體制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자원분배상의 효율성과 생산요소 이용상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 투자, 유통관련 법규·정책이 명료화되고 내규나 지침들이 공개화 되면, 법제도의 투명성(transparency)이 높아져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가 축소될 것이다.

한편 중국이 WTO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조인된 국제조약, 협약, 규범을 존중·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WTO내에는 이와 관련,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제도 관행이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TPRB (Trade Policy Review Body)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은 97년 7월 홍콩인수 이후 세계무역액에서 점하는 지위가 종전의 제11위에서 제4위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매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무역정책·제도를 검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시장접근도의 제고, 지적권 보호, 국가간의 '公正貿易과 自由競爭'(fair trade and free competition) 등에 관한 '게임의 룰'을 배우는 동시에, Post-UR의 新통상의제에 부합되게끔 중국의 노동과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고 경쟁정책, 안전 및 기술표준, 노동 관행 등을 개선·선진화해야 한다.

이는 곧 경제관련 법규·체제·관행의 명료화와 선진화, 내부지침의 공식화, 國際規範 준수 의무의 증대 등을 통해 중국정부 통상정책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고, WTO 체제내에서 중국경제체제가 선진화·국제화됨을 의미한다.

#### 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둘째, 지금까지 중국의 국내산업은 업종별, 품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

면,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중국기업을 차단시켜온 각종 무역·투자관련제도적 보호막이 점차 걷히게 된다.

우선 輸入 關稅率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관세율은 개도국 수준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제네바에서의 미국·EU과의 GATT/WTO 가입 협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율은 평균 57.4%에서 18.6%로 인하되어야 하고, WTO 가입이후 3~5년이내에 관세수준이 단계적으로 매년 평균 50%씩 인하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90년대들어 WTO 가입에 대비하여 여러 차례 관세를 인하하였고, 1995년 4월 1일에는 설비, 원재료를 중심으로 4천여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평균 35.9%에서 평균 23%로 낮추었다.

중국정부는 이외에도 WTO 가입에 대비, 1990년대초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수출기업에 주던 우대대출금리, 영업손실보전 등 각종 특혜제도를 폐지하였다. 더욱이 WTO 가입이후에는 기업적자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 내지는 축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만, 국제관례에 따라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sup>4)</sup>

한편 중국의 경우, 행정간섭, 계획과 내규에 의한 수입제한, 수입쿼터, 특수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수입허가(I/L)제도, 경영범위제한, 외환방면의 제한 등 각종 非關稅 장벽이 많은데, WTO 가입 이후에는 이들 비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SSRB(standstill & roll-back) 요건으로 인해 새로운 非관세장벽의 도입도 불가능하다.

이는 WTO 가입이후 중국의 관세 및 非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원부자재, 기술도입이 촉진되고,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외제품과의 경쟁기회가 늘어날 것임을 뜻하며, 그 결과 WTO 가입전보다도 기업의 품질 및 기술이 고급화할 것이다. 이외에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無條件附 惠國”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경쟁력을 갖춘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판매상의 「規模의 經濟」달성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보다 安定的인 여건하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상품별·지역별 국제분업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된다.

#### 다. 정책적 市場進入障壁의 완화

WTO 가입이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미치는 세 번째 충격효과는 각 업종별 행정규제와 외자기업에 대한 법·제도적·정책적 시장진입장벽(market entry barriers)이 단계적·선별적으로 완화되는 데서 온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3大, 3小 정책’이 실행되고 있고, 통신산업의 6대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기득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도매유통업종과 무역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진입이 봉쇄 내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이같은 폐쇄적 정책규제와 진입장벽은 점차 철폐·완화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무역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조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보세

4) 다만 1995년 7월 1일부터는 부가세환급률을 1994년의 17%에서 14%로, 그리고 1996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8.9%로 하향조정한다. 원래 공시한대로 부가세를 환급해 주지 않아 많은 외자기업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

구역내의 외자무역기업에 대해서만 허가되었으나, WTO 가입이후에는 이같은 인위적 정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무역업종에도 외국기업의 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대외무역 수행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출기회가 확대되어, 중국 경제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WTO 가입은 공정한 시장경쟁,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의 강화, 外資企業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한 ‘均等한 進入 및 競爭機會의 부여’(“level the playing field”) 등을 결과해 볼 때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줄 것이고, 경제체제의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과 선진 경영방식·기법의 도입이 촉진되어 중국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 라. 국제경쟁에의 노출과 기업간 競爭의 심화

넷째, WTO 가입이후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는 모든 외자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외자기업간에는 시장선점이나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WTO 가입전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며, 그 결과 선진기술의 對中이전,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어,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선 외자기업의 진입증대와 경쟁치열화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시장개척에 있어 보다 附加價値가 높은 상품이나 高技術品으로 上向移動(moving upmarket)하게 하는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관련된 무역·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술교류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곧 서비스 및 상품교역장벽의 완화요인과 더불어 시장경쟁의 심화가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기업체질을 혁신지향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특히 중국 內需市場을 개척하려는 외자기업은 생산과 마케팅 노력을 타 외자기업보다 제품 사이클이 앞선 제품에 특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경쟁력이 없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기업은 내륙지역으로의 입지이전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WTO 가입이후에는 국내외기업간의 이중가격제나 세제혜택상의 차별이 실질적으로 축소 내지는 제거될 것이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호만을 받아온 중국의 국내기업은 물론, 시장에서 준독점적 내지는 과점적 지위를 누리온 외자기업도 보다 치열한 시장경쟁에 봉착해야만 한다. 결국 외자기업의 진입증대와 競爭심화는,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정책,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21세기를 향한 중국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시키고 중국경제를 국제화시키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 4.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WTO 추진경위와 가입전망을 살펴본 다음, 그것이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전망해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

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해 중국의 輸出入 기회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관련 법규·관행의 명료화와 합리화, 國際規範 준수 의무의 증대, 자원배분메카니즘의 효율성 향상, 정책적 진입장벽의 완화와 시장개방, 경쟁심화와 기업체질 강화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WTO 가입이후 가격, 환율, 조세, 금융 등 무역·투자를 지원하는 다른 경제부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노력이 확대·심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惠澤(benefits)과 費用(costs)은 WTO 가입시기, 가입조건이라는 外生的 요인과 함께, 중국지도부가 경제체제 개혁·개방의 폭, 속도, 범위를 여하히 조절할 것인가 하는 對內的 요인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WTO 가입과는 별도로 산업조직 재편, 다국적기업집단 육성, 해외 직접투자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도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金益洙 (1995),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進入·流通障壁: 소비자 공산품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제95-3호, 서울: KIEP.
- \_\_\_\_\_ (1996),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제 95-10호, 서울: KIEP.
- Chiu, Thomas C. W. (1992), "China and GATT: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Norms for China,"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92.
- GATT (1994), "China's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to GATT 1994 and A Schedule of Commitments to the GATS," Sept. 1994.
- Hamilton, C. and Whalley, J. (1995),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Results o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vol.18, no.1, Jan 1995, pp. 31-49.
- Low, P. and Yeats, A. (1995), "Nontariff Measur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the Uruguay Round Leveled the Playing Field," *The World Economy*, vol.18, no.1, Jan 1995, pp. 51-70.
- Tao, Denghai (1991), "China and Services Negotiation," *Journal of World Trade*, April 1991.
- Wang Guiguo (1994), "China's Return to GATT: Legal and Economic Implic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92.
- 馬曉野, 白樹強, 顧民, 孫小杰, 沈義杰 編 (1992), 『關貿總協定與中國』,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房漢廷·潘 峰 (1993), "試論關貿總協規則與我國市場經濟建設," 『財務經濟』, 제6기,

---

pp. 6~9.

孫燕君 (1993), 『中國加入關貿總協定的利弊及對策』,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王 軍 (1993), 『關貿總協定與中國經濟』, 北京: 中國金融出版社.

郁建民·仇承遠·李琦 (1994), “‘復關’對國有商業的影響及對策,” 『財務經濟』, 제2기,  
pp. 44-47.

劉 園 (1995), “中國對外貿易體制改革: 機遇與挑戰并存,” pp.137-158, 『中國의 金融·貿易  
制度 改革과 資本市場 展望』, 高大 企業경영연구소·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공  
동주최 세미나 발표자료(1995. 10. 18).